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45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025	강선영의원	2024.12.27.	2025.2.18.
	12625	소병훈의원	2025.9.3.	2025.11.12.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일정
7025	강선영의원	2024.12.27.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3.11.)
12625	소병훈의원	2025.9.3.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한편,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제77조의2”로 하고,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를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로 하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확인신체 검사대상자”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 19. (생략)

④·⑤ (생략)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생략)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 확인신체검사대상자-----

11. ~ 1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